

구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구미시장

2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중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용어와 조문 등을 정리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액을 동인자에 대하여 1,500원을 1,800원으로 개정
-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던것을 8월 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개정
- 법령에서 건설기계가 재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세조례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명칭, 종류, 취득년월일, 용도, 신고의무조항을 삭제
- 법개정에 따라 주요용어 변경

4. 검토의견

-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되는 조항을 정리하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'95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구미시장

2. 관리계획 변경이유

- 분동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(지산동, 신평2동, 옥계동) 확보와 경로당(광평동) 건립부지 확보.
- 선산출장소 청사부지 확장 용지취득 및 수도용수관로부설을 위한 수도용지 확보를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일반회계

- 취득재산 : 토지 5필 3.123.1 m² (944.7평)

노인정 부지 : 광평동 578-19 249㎡ (75.3평)

동사무소 부지 : 신평동 산 17-7 1.076㎡ (325.5평)

옥계동 556-7 1.015.1㎡ (307평)

선산출장소 부지 : 선산읍 동부리 541-2 661㎡

541-3 122m²

(236.9평)

- 교환재산 : 토지 3필 1,745.3㎡ (527.9평)

┌ 처분 : 형곡동 141-6 588.3㎡ (형곡파출소) (178평)

└ 원평동 964-11 750㎡ (원동파출소) (226.9평)

└ 송정동 67 407㎡ (송정파출소) (123.1평)

└ 취득 : 지산동 853-12 4,250㎡ (1,285.6평)

○ 특별회계

- 취득재산 : 토지 6필 11,300.5㎡ (3,418.2평)
(용수관로부설 및 가압장 시설용지)

- 매각재산 : 토지 2필 187㎡ (56.6평)
(주택건설 사업지 편성)

4. 검토의견

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분동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위해 공공시설 용지 확보를 위한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